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제정 이유

가. 「영유아보육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주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보육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·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「성주군어린이집운영조례」를 폐지함.

2. 주요 내용

가.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11조)

1) 구성 : 15명 이내(위원장 1, 부위원장 1, 위원 13)

- 위원장 : 부군수
- 부위원장 : 보육업무담당과장
- 위촉직 위원 : 전문가, 원장 및 교사, 보호자 대표 등

2) 기능 :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어린이집 설치·수급계획 등의 보육정책, 군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, 교직원자격 정지, 취소 등을 심의

3) 임기 : 위촉직 2년(1회 연임 가능), 당연직 재임기간

나. 성주군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(안 제12조~22조)

1) 어린이집 설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

2) 원장 및 교직원에 관한 사항

3)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

- 위탁대상 : 비영리법인·단체, 개인
- 위탁방법 : 보육정책위원회 선정심의 후 수탁자와 협약
- 위탁기간 : 5년, 재위탁가능(보육정책위원회 심의)

다. 비용의 보조 및 환수(안 제23조~26조)

1) 어린이집 등에 대한 비용 보조

2)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료 보조

3) 보조금의 환수

라. 종사자 교육 및 시상(안 제27조~30조)

3. 참고사항

가 . 근거법령

1)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, 시행규칙, 보육사업안내

2) 「성주군어린이집운영조례」 및 「같은 조례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1) 개정규칙안 : 별첨

2) 입법예고(2012. 4. 10 ~ 4. 29)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
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4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「영유아보육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주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보육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·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로서

○ **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과 보육정책 군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비영리법인·단체·개인에게 위탁 5년후 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재위탁 가능하며**

○ **비용의 보조 및 환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교원의 자격정지, 취소 등을 규정하였고, 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교직원에게 시상하여 사기 앙양으로 영유아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정조례로서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제정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.**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